

(제2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발신 : 시장

참조 : 도시계획국장

제목 : 랑 음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법(유수지)을 폐지함이 타당함을

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(사본) 및 도면 1부.

끝.

(제3안)

수신 : 농무처장관

발신 : 시장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포계제 의뢰

1. 다음과같이 관포계제 의뢰합니다.

가. 계제 구분 : 고시.

나. 계제 건명 : 도시계획시법(유수지)변경청정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

라. 계제 내용 : 폐지

첨부 : 고시문(사본) 2부.

끝.

(제4안)

1813

수신 : 영동포구청장

발신 : 시장

참조 : 도시계획과장

제목 : 같 음

1. 도정30310-9325(90.7.24)호와 관련임

2. 위호와 관련 귀 구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폐업처분이 변경필요

하고 통보하니 관련부서에 알리기 바람이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

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적승인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본(사본) 및 도면 1부. 끝.

(제5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발신 : 과장

제목 : 같 음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폐업처분이 변경필요하였기 통보

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본(사본)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치수과장.

1514

영동포구청
도시계획과
인

20
90.10.22 305
2170 김

고 사

서울특별시 고시 제 350호
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변경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부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와 영동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동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포함니다.

1990. 10.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 (㎡)	비 고
기장	유수지	영동포구 신길동 43-59일대	8,560	신길 유수지
변경	"	"	8,839	증: 279㎡

나. 변경결정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및 영동포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

도시계획서 (유수지) 변경결정

